

부설연구소 설치 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서울신학대학교 부설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.)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치) ① 각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소의 명칭, 목적, 사업, 규정 및 기타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교무처에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5. 8>

② 해당부처장은 설치여부를 심사한 후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7. 5. 8>

제3조 (규정) ① 각 연구소는 반드시 그 연구소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하며, 그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.

② 삭제<2007. 5. 8>

제4조 (조직) ① 각 연구소에는 연구소장과 전임연구원,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각 연구소에는 필요한 부서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각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특별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④ 각 연구소에 필요한 경우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5조 (자격 및 임명) ① 각 연구소의 소장은 본 대학 교원중에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② 특별 연구원은 연구소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③ 연구소 조교는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한다.

제6조 (연구위원) ① 전임교원은 해당교원이 소속된 학과의 연구위원이 된다.

② 연구위원은 임기를 두지않고 필요에 따라 해촉할 수 있으며 연구위원이 본 대학 교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 (운영위원회) ① 각 연구소에는 예산 및 운영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위원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과 의결) ① 각 연구소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.

② 연구소의 회의는 각 연구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 (재정) ① 각 연구소의 경비는 교비와 그 연구소 사업에 의한 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.

②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대학 회계년도와 같다.

제10조 (사업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(서식1)을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5. 8>

① 연구소의 사업 운영보고

- ②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
- ③ 연구소의 연구업적 수시 보고
-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1조 (회의록) 연구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운영세칙) 삭제<2007. 5. 8>

제13조 (규정의 개폐)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기획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7. 5. 8>

제14조 (연구소의 통폐합 및 폐지) 각 연구소는 3년 주기로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연구소업적평가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통합 및 폐쇄조치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5. 8>

- ① 연구업적
- ② 연구소의 사업의 목적성
- ③ 재정능력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【서식 1】

연구소 사업 운영 보고서

1. 인사

소 장:

운 영 위 원:

간사 및 전임연구원:

보 조 연 구 원:

2. 행사 - 근거 실적자료 반드시 제출

1) 세미나 (월별로 일시, 장소, 발표자 순으로)

2) 연구실적(저서, 소식지, 간행물 등)

3. 연구소 연구비 수입 및 지출

1) 수입

과 목	내 역	금 액	비 고
전년도 이월액			
지 원 금	교내		
	교외 (지원기과 or 지원자순으로)		
출 판 수 입	출간물판매수입		
잡 수 입	연구비 집행 잔액		
	이자수입		
기 타			
계			

2. 지출

과 목	내 용	금 액	비 고
인 건 비	급여성(간사)		
	급여성(전임연구원)		
회 의 비	회의참석수당		
도서구입비	도서구입비		
논문집발간비	원고료(연구비)		
	인쇄비		
세 미 나	강사료		
	다과 및 음료(식대)		
	잡비(우편료, 프랭카드, 포스터 등)		
운 영 비	공공요금		
	접대비		
	활동비		
	인쇄비		
	자료구입비		
비 품 비	비품 구입 및 사용비		
기 타			
계			
잔 액			